

트러스트 TDF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DV226)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재간접투자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트 TDF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2030년을 투자자의 은퇴시점이자 목표시점으로 설정하고 설계된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Glide Path)를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설정 초기 시점에는 국내외 주식 및 대체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률 제고와 노후자금 축적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목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과 인컴수익 발생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 주식 및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로 투자하며, 목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2030년 이후로는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로 운용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이내	0.390	0.220	0.860	0.540	106	165	227	3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520	0.350	1.210	0.670	70	144	220	3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280	0.110	0.580	0.430	70	117	166	27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345	0.175	0.750	0.495	52	106	163	284
(주 1) '1,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7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증가와 NAV(순자산)의 괴리 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 방식 변경 및 중단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 기구 유동성 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 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7영업일에 지급 · 17시 경과후: 6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대상	과세 시기	세율	세제혜택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조의 3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5. 9. 5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8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tr><td rowspan="5">기타</td><td>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td></tr><tr><td>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